

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	보 도 자 료	
보 도 일 시	토지실	배 포 일 시 2010. 4. 16 (금) / 총 2매

담당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• ☎ (02)2110-8260
부서 공공주택건설부 과장 한창섭, 사무관 이규열, 유상철
기획총괄과 (02)2110-8322, 6268
- 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 4월 19일 개정 공포
- “자산기준” 4월 21일 공포 시행

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이 마련 시행된다

□

□ 국토해양부(장관 : 정종환)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의 근거를 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이 2010년 4월 19일(월) 공포·시행되고, 이에 따른 자산기준(국토해양

부 고시)을 마련하여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 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자가 당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산에 관한 입주요건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관한 개정예용서를 마련한 것이다.

-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자산요건을 추가하였다.

□

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(소)의 보유내용을

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

도시차량 관련 업종 체력 기준 : 3
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분양에
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분양은
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
하였다. 소득의 100%로 두고

대해 자산기준을 적용
납입하면 세 공공분양을 기하여
능한 점을 고려하여 적당히
소득분위 5분위까지를

토지 및 건물 기준가

세자료)기준은 국민건강보험
5등급(총 50등급)의 평균재산
준으로 하였고
은 점과 민영주택의 총

원 2,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
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
(‘09년 105.4)를 곱하여 산정한
하였다. 토지(공시지가) 및 건

매년 10%의 상승률에
금액(금년 21,550만원)

로 하되, 화물차, 영업용차량과 장애인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.

-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총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.

자동차의 경우를 ‘09년
금액인 2,500 만원을
는 차량구입비 소비자
금액(금년 2,635만원)

자 자산기준

○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기준을 적용하였다.

- 토지 및 건물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0등급(소득 4분위) 평균 재산금액(금년 12,600만원)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,

- 자동차의 경우는 '09년 보험개발원 2,000cc 신차 기준가액 평균 금액인 2,300 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('09년 105.4)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(금년 2,424만원) 이하로 정하였다.

물)	자동차
의 재산 25등급 균재산 적용	○ 2,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,500 만원을 기준 으로 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 물가지수('09년 105.4)를 곱하 여 산정한 금액 이하 * '10년은 2,635만원 적용
의 재산 20등급 균재산 적용	○ 2,000cc 신차 기준가액 평균 금액인 2,300 만원을 기준 으로 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 물가지수('09년 105.4)를 곱하 여 산정한 금액 이하 * '10년은 2,424만원 적용
장기전세 주택의 경우는 정책목표가 동일하게 소득 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	

국민임대

보금자리

부동산 (

○ 국민건강

등급별

(총 50등

금액 이하

'10년은 2

○ 국민건강

등급별

(총 50등

금액 이하

* '10년은 1

※ 10년 임

신혼부부

하고 있는

하게 적용

10년 임대 ·
장기전세

□ 이번에 개정 · 공포되는 개정 내용은 '10. 4. 19일자 관보와 같
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ltm.go.kr/> → 알림
마당 → 보도 · 해명 → 주택 · 토지분야에서 검색, ☎
2110-8260~2)에 게재된다.